

건설정책리뷰 2023-10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 개선 방안

박 승 국

2023.12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요 약

-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제도’는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협력사와의 공동도급·하도급 실적과 협력사 육성 및 신인도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종합업계에 대한 지원 제도임. 상호협력평가 항목인 교육지원 가점은 현재 변별력이 낮고, 원도급사에 인센티브만을 주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정부의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생발전과 공정거래 강화 측면에서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의 실태와 하도급사를 상대로한 원도급사의 교육 지원 현황 등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문제점) 상호협력평가 교육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열위한 하도급자 권리보호, 공사품질 향상 등의 목적으로 원·하도급자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가 원도급사의 상호협력점수 취득이 용이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결국 종합건설업체와 대한건설협회를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문제점) 종합업체의 입찰시 가산점을 받기 위한 제도로 운영

 - 매해 평가신청업체의 80% 이상이 우수업체로 선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은 제고 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신청 종합업체 2,864개사 중 평가점수 60점 미만으로 우수업체가 되지 못한 곳은 353개사에 불과함
- (문제점) 협력업체가 아닌 종합업체의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상호협력 교육제도는 종합업체가 협력회사인 전문건설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사업임에도 교육 대상이 협력업체가 아닌 종합건설사 자사 임·직원(약80%)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교육기관 선택의 자율성 저해에 따른 효율성 저하**
 - 대한건설협회가 상호협력 교육의 서류접수, 평가산정, 평가배점, 평가결과, 교육 운영까지 맡고 있음에 따라 6개 교육기관 중 대한건설협회가 거의 교육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 및 효율성 저하가 야기되고 있음

- **(문제점) 협력업체 교육지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협력업체 맞춤형 교육 필요**
 - 현재 대한건설협회의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은 건설사업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신규 건설업자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을 협력업자 육성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어 본 제도의 교육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 원도급업체의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치지 않고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 제도의 취지에 맞게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 **(개선방안)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대상을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전환하고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기관 분리 운영**
 -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의 당초 취지는 종합건설업체가 그의 협력업체(하도급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제도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역시 개정전에는 교육대상이 협력업체의 임직원이었음
 - 따라서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거래 방지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운영되었던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대상을 종합건설사업자의 협력업자 임·직원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의 교육기관은 종합건설사 임직원이 교육 대상인 경우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을 교육기관으로 전문건설사 임직원이 교육 대상인 경우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개선방안)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현행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은 원도급사 대상의 교육이 대부분이라, 하도급사의 권익보호나 상호협력 강화 등의 교육이 부족한 상황임. 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인 하도급사에게 필요한 건설계약 실무, 건설안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교육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대상을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전환,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기관 분리 운영,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등의 개선안 하루빨리 마련되어, 제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임**

목 차

I. 서론	1
II. 상호협력 교육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3
1. 상호협력 교육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2. 종합업체의 불공정거래 현황 및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의 문제점	8
III.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 개선 방안	23
1.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대상을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전환하고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기관 분리 운영	23
2.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25
IV. 결론	26
참고문헌	28
부록	29

1. 서론

- 1998년부터 도입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제도’는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협력사와의 공동도급·하도급 실적과 협력사 육성 및 신인도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종합건설업체 지원 제도임
-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평가제도’상으로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로 평가될 경우 조달청과 지자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최대 3점 가점을 비롯해 적격심사, 종합평가 및 종합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공공공사 입찰의 경우 불과 단 1점 차이로 낙찰자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종합업체 입장에서는 무시 못 할 혜택이어서 매년 3,000개 내외의 업체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음
- 상호협력평가는 대한건설협회가 소속 종합업체 회원사들을 평가하고, 우수업체를 선정함. 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확인하는 역할만 맡고 있으며, 상호협력의 상대자인 하도급업체는 이 과정에서 종합업체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며 협조하는 상황으로 본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특히 상호협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업체 육성 평가항목의 교육 지원 가점에 대한 실효성 저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상호협력의 평가대상이 종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주체가 대한건설협회이며 평가항목중 하나인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하는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지원은 종합업체가 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교육시켜 용이하게 점수를 획득하고 있음

-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는 종합건설업체가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교육 지원을 시행하는 제도이나 현재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내용 등의 부적절성에 따른 운영방식의 타당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협력업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원도급사가 지원하면 평가 시 가점을 주는데, 원도급사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도급사에 요구시 하도급사 입장에서 교육에 응하기는 하나 교육을 시행하는 곳이 대한건설협회라는 점은 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하도급사를 위한 교육이 원도급사 입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하도급사 입장에서의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내용 구성이 어려워지므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를 현행대로 계속 운영할 경우 갈수록 평가의 효율성을 잃고, 원도급사에 인센티브만을 주는 원도급사를 위한 제도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 정부의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생발전과 공정거래 강화 측면에서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의 실태와 하도급사를 상대로한 원도급사의 교육지원 현황 등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상호협력 교육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 상호협력 교육의 법적 근거 및 내용

가. 상호협력평가제도 목적 및 개요

- (평가목적) 대·중소 건설업체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업체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 실시
- (평가대상) 전년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협력관계, 전년도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 (평가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¹⁾ 및 동법시행령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및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등록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도, 제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록 및 건설업체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21호(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협력업자 개념과 인정범위) 종합건설업자(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 종합건설업자는 시공할 공사와 관련된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체 기준에 따른 업체 심사후 협력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 협력업자의 인정범위는 신청사가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환경공사 관련 등록 건설업자임
 - 신청사가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 환경공사 관련 등록 건설업자임

〈표 2-1〉 협력업자 개념과 인정범위

신청사	협력업자의 인정범위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 환경공사 관련 등록 건설업자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 환경공사 관련 등록 건설업자

※ 협력업자 여부 확인

- 종합건설업자가 당해연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제출한 '협력업자 관리 대장'의 명단에 따름
(단, 위의 협력업자의 인정범위에 포함된 건설업자에 한함)

- (상호협력 평가항목 및 배점구성) 상호협력평가는 크게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항목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은 〈표 2-2〉와 같음
 - (대기업 상호협력 평가기준) 만점 100점
공동도급 실적 10점, 하도급 실적 20점, 협력업자 육성 58점, 신인도 12점
 - (중소기업 상호협력 평가기준) 만점 100점
공동도급 실적 (0)점, 하도급 실적 25점, 협력업자 육성 53점, 신인도 22점

○ (상호협력 평가결과 우대내용) 상호협력평가 평가 결과 우대내용과 우대기간

- 공공 공사 PQ·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 시 가점: 매년 평가결과 적용 시작일(매년 6월말경)부터 다음연도 평가 결과 적용 시작전 일까지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 매년 시공능력 평가 시(매년 7월말 경)부터 다음년도 평가 전일까지
- 건설산업기본법상 별점 감경: 매년 평가결과 적용 시작일부터 3년간

〈표 2-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5점)		
2. 하도급 실적		20점	25점	
-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3. 협력업자 재무건정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40점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15점)	
	②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	(8점)	(8점)	
	③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5점)	(5점)	
	④ 전자하도급계약	(2점)	(2점)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① 재무분야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건설업교육 신설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10점	5점	
다. 상생협업체 운영	5점	5점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3점		
4. 신인도		12점	2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2점)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사항 감점		(10점)	(20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대기업	중소기업	
5. 가점	+3점	+3점	
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	가점(3점)	가점(3점)	
총계	100점	100점	

- (상호협력 평가결과 우대내용 변경) 상호협력평가 평가 결과 세부 우대 내용이 기존에 지차체공사 적격심사시 최대 3.0 가점 규정이 2023년부터 지자체 공사 PQ 심사시 가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적용되어 상호심사 평가 결과의 우대 사항을 축소한바 있음

〈표 2-3〉 상호협력결과 평가 세부 우대 변경 후 내용(2023년)

평가결과 점수구간	가점				가산 시공능력 평가액	감경 건산법상 별점
	조달청		지자체			
	PQ·적격	종합심사	PQ·적격	종합평가		
95점 이상	3.0	0.6	<u>2.0</u>	0.5	6%	-0.5
90점 이상 95점 미만	2.0	0.5				-
80점 이상 90점 미만	1.5	0.4	<u>1.5</u>	0.4	5%	-
70점 이상 80점 미만	1.0	0.3	<u>1.0</u>	0.3	4%	-
60점 이상 70점 미만	0.5	0.2	<u>0.5</u>	0.2	3%	-

〈표 2-4〉 상호협력결과 평가 세부 우대 변경 전 내용

평가결과 점수구간	가점					가산 시공능력 평가액	감경 건산법상 별점
	조달청		지자체				
	PQ·적격	종합심사	PQ	적격	종합 평가		
95점 이상	3.0	0.6	2.0	3.0	0.5	6%	-0.5
90점 이상 95점 미만	2.0	0.5					-
80점 이상 90점 미만	1.5	0.4	1.5	2.2	0.4	5%	-
70점 이상 80점 미만	1.0	0.3	1.0	1.4	0.3	4%	-
60점 이상 70점 미만	0.5	0.2	0.5	0.5	0.2	3%	-

나. 상호협력 교육 현황

- 상호협력 교육평가를 위한 위탁교육은 2010년 1월 한국경영원, 대화직업능력개발원, 대한건설협회, 환경안전보건협회, 선안전기술공사, 서울건축토목학원 등 총 6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되었음
- 상호협력 교육평가를 위한 교육기관의 확대를 목적으로 2018년 10월에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총 6개 기관에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으로 확대 운영 되고 있음²⁾
- 상호협력 교육평가를 위한 교육의 실시는 종합건설사가 교육기관 선택하여 협력업체(전문건설)에게 교육통보하여 실시되는 형태임

〈표 2-5〉 상호협력 교육평가를 위한 교육 운영 현황

구 분	상호협력 위탁교육 (2010.1.21)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2018.10.23)
평가기관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교육기관	대한건설협회 한국경영원, 대화직업능력개발원, 환경안전보건협회, 선안전기술공사, 서울건축토목학원 (6개)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6개)
교육대상	협력업체 임·직원	종합건설사 자사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인정기준	1명교육 이수시 1배인정	1명교육 이수시 3배인정
교육비지원	원도급사(종합건설)	원도급사(종합건설)
교육내용	건산법 등 8시간	건산법, 하도급법, 계약법, 안전관리, 윤리경영 등 8시간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

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1. ~ 4. (생략)

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법 제9조의 3 규정에 의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종합건설사업자 및 그 협력업자 임직원에게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5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종합업체의 불공정거래 현황 및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의 문제점

가. 상호협력평가 우수 종합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 상호협력평가시 우수업체로 평가받는 종합업체가 80%가 넘고 있으나 종합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이 △2017년 1,527건, △2018년 1,804건, △2019년 1,295건, △2020년 1,036건, △2021년 1,369건 등 최근 1,000건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표 2-6〉 참조)
 - 하도급사를 상대로 다수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종합업체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도 발생한 바 있음³⁾
 -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는 대표적으로 추가 및 변경 공사 계약서 미교부,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물가 및 설계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부당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 기술자료 탈취등의 원도급자 부당 행위 등임
- 국토연구원이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2021년)’ 분석에 따르면 하도급사가 인식하고 있는 전체 공정성 지수는 41.2로, 원도급사 지수인 52.9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서도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67.9점에 불과한 상태임
 -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합업체들이 하도급사를 상대로 여전히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종합업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원인으로는 원도급자의 상대적 우월 지위로 인한 불공정거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건설업체로서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규의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건설업체의 건설산업 관련 법률적·윤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의 결여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문화정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3) 전문건설협회 내부자료, 2022년

〈표 2-6〉 원도급자인 종합업체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출처: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제목	① 추가공사 서면 미교부 (사건번호 : 2020광사2656, 의결 제2020-076호, '20.11.16)
행위사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5건의 건설공사를 추가 위탁하면서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함
의결사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계약 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함(재발방지명령 부과)
주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공사를 추가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기일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② 변경계약서 미교부(사건번호 : 2018부사2017, 의결 제2020-343호, '20.12.29)
행위사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내역을 변경위탁 하면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함
의결사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내역 변경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에 금액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함(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주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변경위탁하면서 변경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③ 서면 미교부(사건번호 : 2018전사1060, 의결 제2020-256호, '20.09.02)
행위사실	원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함
의결사항	원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작성한 후 이를 발급(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기연장에 따라 하도급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변경계약서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함(재발방지명령 부과)
주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 또는 변경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④ 하도급대금 미지급(사건번호 : 2019부사2395, 의결 제2020-051호, '20.08.24)
행위사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의결사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함(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부과)
주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⑤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사건번호 : 2019건하2244, 의결 제2020-296호, '20.11.12)
행위사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의결사항	사업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함(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주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사건번호 : 2019부사1686 등 5건, 의결 제2021-015호, '21.03.25)
행위사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예외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음
의결사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정보증기한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2의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함(재발방지명령 부과)
주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미조정(사건번호 : 2015광사2730 의결 제2015-089호, '15.3.23)
행위사실	원사업자는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발주자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인 30일을 초과할 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함
의결사항	원사업자는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발주자부터 물가변동을 반영한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법정기한인 30일을 초과할 때까지 그 내용과 비율대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증액하여 주지 않은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3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함
주문	원사업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그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않는 것과 같이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사건번호 : 2019건하0798 의결 제2021-129호, '21.05.12)
행위사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그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출한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함
의결사항	원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행위는 법 제16조 3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함(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주문	원사업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㉑ 부당한 특약 설정(사건번호 : 2018부사2100, 의결 제2020-010호, '19.03.10)
행위사실	<p>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함</p> <p>① 수급사업자가 물가 또는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조건</p> <p>② 설계내용에 없는 원사업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거나, 원사업자의 지시로 인한 돌관 작업, 야간·휴일 작업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p> <p>③ 수급사업자가 공사 중지시 발생하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계약조건</p> <p>④ 수급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공사 또는 이에 부수되는 청소 등의 작업을 원사업자가 임의로 직접 수행한 후 그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p> <p>⑤ 공사가 해제·해지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을 포기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하는 계약조건</p>
의결사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공사 수행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법 제3조4의제2항의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함(재발방지 명령 부과)
주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공사 수행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㉒ 경쟁입찰에 결과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사건번호 : 2018서건0556, 의결 제2020-051호, '20.03.06)
행위사실	원사업자는 도장 및 외단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의결사항	현장설명에 참여한 2개의 업체가 밀봉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5차례 걸쳐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입찰금액보다 609,000천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됨(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주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위탁함에 있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⑪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사건번호 : 2018서건0678, 의결 제2021-030호, '21.01.29)
행위사실	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금액을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의결사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지명 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니고, 원사업자 자신이 선택한 수급사업자와 수의시담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위반되므로 위법함(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주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함에 있어,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⑫ 부당한 위탁취소(사건번호 : 2018부사1417등 9건, 의결 제2021-037호, '21.02.08)
행위사실	사업자는 19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철의장품, 배관류, 전장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한 후, 설계오작, 선주 요구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함
의결사항	원사업자의 제조위탁 취소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위법함(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주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위탁을 취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⑬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사건번호 : 2014건하2215, 의결 제2018-031호, '18. 1.15)
행위사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상당기간 지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합의의 형식을 빌려 감액함
의결사항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함(재발방지명령 부과)
주문	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을 감액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⑭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사건번호 : 2016서건3444, 의결 제2018-074호, '18.9.10)
행위사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임대료, 비품 구입비용 및 감리단 사무실 개설비용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고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
의결사항	원사업자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함
주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감리단 사무소 개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⑮ 기술자료 유용 및 제3자 제공(사건번호 : 2018제하2048, 의결 제2020-306호, '20.12.03)
행위사실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제작도면 등과 같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의결사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위반되어 위법함(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주문	과징금 고시 IV.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때,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결정
제목	⑯ 탈법행위 (사건번호 : 2017서건1710, 의결 제2018-331호, '18.11.6)
행위사실	원사업자는 공정위 직권실태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건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자진시정하여 지급 완료하였다고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건 조사 중에 미지급액을 지급함
의결사항	원사업자는 실제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된 것처럼 허위자료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어음할인료 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하였으므로 하도급법상 탈법행위 금지 규정인 하도급법 제20조에 위반되므로 위법함
주문	원사업자는 어음할인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제목	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위반(사건번호 : 2012구사1063, 의결 제 2012 - 234호, 2012.10.10.)
행위사실	수급사업자는 이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40,700,000원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시공 완료 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청구(2012.1.31.) 하였으나,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채권가압류(2012.2.3.~4.4) 등을 이유로 직접지급 요청을 거부하고 법원에 공사대금을 공탁(2012.4.6.)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의결사항	이 사건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함 또한 수급사업자가 2012.1.31.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한 직접지급청구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였고, 원사업자의 채권가압류 등의 최초 송달일이 2012.2.3.일인 점을 감안하면 직접지급청구권은 그 이전에 이미 성립한 것이 명백하므로 발주처는 공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구지법 2012.8.22. 선고 2012가단15005 판결).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금액(40,700,000)전액에 대하여 발주처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발주처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함
주문	주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0,700,000원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함

나. 상호협력평가 교육제도의 문제점

- 상호협력 평가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 선정제도’⁴⁾와 종종 비교 할수 있음.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게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상호협력평가 가점 3점, 누산 별점 산정 때 별점 경감 3점 등 공정위,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임
- 하지만 두 가지 제도에는 운영주체와 선정하는 기업 수 측면에서 크게 다른 점이 존재함.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 선정은 공정위가 하고 매년 선정하는 기업이 많아야 10개 정도이나 이에 반해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는 종합건설기업들을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가 서류접수, 평가 등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해 수행하고 선정업체도 매년 수가 2,000~3,000개에 달함

-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2017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제도로 통합되었다가 2020년 4월 행정예고를 통해 재시행됨
 - 그러나 대기업 대비 자금·인력이 부족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제도 재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 제도가 다시 시행함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자격은 하도급범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임
 - 선정 기준에는 기존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 등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항목이 추가됐으며,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모범업체로 선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 자격을 변경함. 기존에는 △전년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최근 3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자금지원 3000만원 이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했으나. 변경안에서는 △직전 1년간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최근 3년간 하도급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직전 1년간 기술 및 자금지원 등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변경됐으며, 여기에 △직전 1년간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 중인 사업자 △직전 1년간 하도급대금의 평균지급일수가 40일 이내인 사업자가 추가됨
 - 선정 절차는 매년 9월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및 신청이 안내되고 10~11월 중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됨. 이를 통해 후보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현금 결제 비율, 기술 및 자금 지원 실적,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최종 심사 및 선정은 11~12월 중으로 이뤄지며 12월 중 관련 부처 통보 및 보도 자료가 배포됨
 - 선정 업체는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간), 국토부(상호 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조달청(물품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신용 등급 상향 및 대출 금리 인하) 등 범부처 하도급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하도급 별점 경감(3점) 혜택을 받게 됨
 -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등이 확정되면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함
 -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돼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범업체로 선정함

- 국토교통부가 아닌 대한건설협회가 소속 회원사들을 평가하고, 우수업체를 선정. 대한 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확인하는 역할만 맡고 있음. 상호협력의 상대자인 하도급업체는 이 과정에서 원도급사가 얼마나 잘 해주는지 확인해주고, 가점을 위한 교육도 이수해줘야 하는 등 평가를 위한 협력자로서만 활용되고 있음
- 이처럼 제도운영의 편파성과 함께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제기되고 있음. 우선 최근에 종합건설업체 2,511개가 최소 2점 이상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될 정도로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18개사 가운데 16개사와 파산선고를 받은 1개 업체가 그해 우수업체에 포함되기도 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⁵⁾
-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
 - 상호협력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공공입찰 참여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최대 3점의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평가 때도 6%까지 우대받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별점 감경 등의 혜택도 주어지고 있음
-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협력업체에 대한 재무적 지원·협력업체와의 공동 기술 개발 및 상생활동·신인도 등이 평가에 반영됨. 경제위기 우려와 건설경기 부진에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감사패와 포상금, 인센티브로 계약 이행 보증보험 면제 기회를 주며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생을 이 어간 덕에 2022년 최우수 등급이라 할 수 있는 95점 이상 업체만 23개사로 전년도 보다 10개사 증가함

5) 전문건설협회 내부자료(2022년),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돌입한 종합업체의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강제변제 당하고, 관련 소송 등 분쟁을 겪었지만 이런 사실은 상호협력평가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1) 상호협력평가 교육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 2010년 1월부터 실시되어온 상호협력 위탁교육은 한국경영원, 대화직업능력개발원, 대한건설협회, 환경안전보건협회, 선안전기술공사, 서울건축토목학원 등 총 6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되어왔으며, 주로 한국경영원, 대화직업능력개발원, 대한건설협회에서 교육대상자의 약 90%를 위탁 교육하고 있음⁶⁾
- 상호협력 교육평가를 위한 교육기관이 확대되어 2018년 10월부터 실시되어온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은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총 6개 기관에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는 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22년 부터는 대부분의 교육생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교육지원자인 종합건설업체가 교육기관으로 대한건설협회를 지정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
-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열위한 하도급자 권리보호, 공사품질 향상 등의 목적으로 원·하도급자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원·하도급사의 상호협력점수 취득이 용이 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결국 종합건설업체와 대한건설협회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표 2-7〉 상호협력 위탁교육 현황(2021년)

구 분	상호협력 위탁교육			비 고
	교육기관명	협력업체(종합) 임직원	협력업체(전문) 임직원	
한국경영원 (온라인과정 계열사 포함)	59	8,482	8,541	49.4%
대화직업능력개발원	-	4,527	4,527	26.1%
대한건설협회	14	2,302	2,316	13.4%
환경안전보건협회	-	1,594	1,594	9.2%
선안전기술공사	-	202	202	1.2%
서울건축토목학원	-	118	118	0.7%
합 계	73	17,225	17,298	

※ 신고내용 중 인정 교육기관 비해당기관 등 제외(53인)

※ '22년 자료 확인 불가 (신고년도 미도래)

6) 국토부가 전문협회에 제공한 자료임. 상호협력 교육현황(국토부, 2022년)

〈표 2-8〉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현황(2021년)

구 분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비 고
	교육신청업체 (종합)자사임직원	협력업체 (전문) 임원	협력업체 (전문) 직원	합 계	
대한건설협회	3,662 (79.4%)	950 (20.6%)	교육 비대상	4,612	
합계	상동				

※ 신고내용 중 인정 교육기관 비해당기관 등 제외(50인)

※ '22년 자료 확인 불가 (신고년도 미도래)

(2) 종합업체의 입찰시 가산점을 받기 위한 제도로 운영

- 상호협력평가 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낙찰 평가 때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됨. 이에 대해 다수 하도급 업계 관계자들로 부터 상호협력평가제도는 변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현행 평가방식으로는 원도급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음
- 매해 평가신청업체의 80% 이상이 우수업체로 선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은 제고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신청 종합업체 2,864개사 중 평가점수 60점 미만으로 우수업체가 되지 못한 곳은 353개사에 불과함

(3) 협력업체가 아닌 종합업체의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상호협력 교육제도는 종합업체가 협력회사인 전문건설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임에도 교육 대상이 협력업체가 아닌 종합건설사 자사 임·직원(약80%)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종합건설사(원도급)가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호협력 교육을 시키고, 상호협력업자 육성지원 배점을 받고 있어, 당초 상호협력 교육지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고 있음
 - 현행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종합건설사업자 및 그 협력업자 임직원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호협력 교육대상을 종합건설사업자의 임·직원에게 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이 상호협력 교육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21년도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전체 이수자 4,612명중 80%인 3,662명이 종합건설사 자사 임·직원임)

〈표 2-9〉 상호협력평가 교육지원 대상 변경

당초 (2007.1.26)	변경 (2018.10.23)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 비교 5. 교육 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교육지원 하는 경우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 비교 5. “생략”경우와 종합건설사업자 및 그 협력업자 임직원에게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고시 (별표2)의 제5호에서 ‘교육지원실적’의 “지원”이라는 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종합건설사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본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임
- 종합건설사 자사 임·직원 대상으로 협력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라는 교육의 내용은 간접교육에 불과하며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며, 협력업체의 지원을 위한 교육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음
- 협력업체의 교육지원을 위한 본 제도의 도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제적인 협력을 논의해야 상대인 협력업자 교육지원 실적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교육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상호협력평가 육성 지원부문은 총 배점이 47점에 달할 만큼 중요한 항목임을 감안해 볼 때, 교육지원 대상도 원도급사의 협력업체 위주로 전환해야 실효적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것임

(4) 교육기관 선택의 자율성 저해에 따른 효율성 저하

- 상호협력 교육제도는 종합업체가 협력회사인 전문건설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임에도 상호협력 평가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임
- 대한건설협회가 상호협력 교육의 서류접수, 평가산정, 평가배점, 평가결과, 교육운영까지 맡고 있음에 따라 6개 교육기관중 대한건설협회가 거의 교육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 및 효율성 저하가 야기되고 있음
- 종합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대한건설협회가 상호협력평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특히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협력업자 건설업 교육마저 대한건설협회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임. 이같은 구조는 하도급사의 권리보다 원도급사 위주의 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협력사업자인 하도급사의 육성과 지원에 효율적이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상호협력 평가 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서류접수부터 교육지원 운영까지 독점 시행하고 있어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평가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업체들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이 부진한 상태임
-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가 협력업체인 하도급사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점을 이용하여 종합건설업체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하도급사는 따라야 하는 우월적 관행 존재
- 타기관이 교육시, 상호협력평가 관련 서류는 교육기관 등록증 및 기관 확인서, 교육훈련 과정 인증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자 증명서 중 택 1 등 제출항목이 많고 절차가 매우 불편한 상황임
 - 이에 비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 교육시 수수료증만 제출토록하고 있어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교육기관을 대한건설협회로 유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표 2-10〉 상호협력평가 교육이수시 제출되는 서류 목록

구분	대한건설협회 교육 이수시	타 교육기관 교육 이수시
제출되는 서류 목록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만 제출	- 교육기관 등록증 및 기관 확인서 - 교육훈련 과정 인증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자 증명서 중 택 1

(5) 협력업체 교육지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협력업체 맞춤형 교육 필요

-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은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의 협력사업자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⁷⁾. 따라서 상호협력 교육목적은 원·하도급자간 불공정거래 방지와 상생 협력 문화 확산 도모로서,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시 협력업체 교육분야 지원 실적으로 인정됨
- 현재 대한건설협회의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은 건설사업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신규 건설업자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을 협력업자 육성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건설업교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어 본 제도의 교육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 건설업교육에 참여한 D전문건설사 직원의 경우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이 종합건설사업자 위주 내용으로 구성되고, 그나마 하도급사의 직원은 교육의 기회도 매우 적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운영 상황에서 하도급사의 특성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보다는 형식적 교육에 치중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원도급업체의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치지 않고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의 취지에 맞게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7)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 개선 방안

1.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대상을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전환하고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기관 분리 운영

-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의 당초 취지는 종합건설업체가 그의 협력업체(하도급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제도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역시 개정전에는 교육대상이 협력업체의 임직원이었음
- 따라서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거래 방지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운영되었던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대상을 종합건설사업자의 협력업자 임·직원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표 3-1〉 참조)
 -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대상 개정안
 - 5. 교육지원 실적은 ...(생략)...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종합건설사업자의 협력업자 임직원에게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5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 현재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은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가 협력업체인 하도급사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점을 이용하여 종합건설업체가 지정하는 대한건설협회를 교육기관으로 하도급사는 따르고 있는 관행이 존재함. 이는 협력업자의 교육기관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의 교육기관은 종합건설사 임직원이 교육대상인 경우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을 교육기관으로 전문건설사 임직원이 교육대상인 경우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표 3-1〉, 〈표 3-2〉참조)

〈표 3-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중 상호협력 교육대상 및 기관 개정안

현행	개정안
<p>[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p> <p>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p> <p>1. ~ 4. (생략)</p> <p>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법 제9조의 3규정에 의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종합건설사업자 및 그 협력업자 임직원에게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5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p> <p>6. ~ 8. (생략)</p>	<p>[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p> <p>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p> <p>1. ~ 4. (현행과 같음)</p> <p>(개정) 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법 제9조의 3규정에 의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종합건설사업자의 협력업자 임직원에게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5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신설) 5의 2. 교육대상자가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의 교육기관은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일 경우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실시 한다</p> <p>6. ~ 8. (현행과 같음)</p>

〈표 3-2〉 상호협력평가 교육기관 분리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현행	개선방안
<p>- 종합건설사가 협력업체의 교육을 신청·교육비 납부(일괄 신청방식)</p>	<p>- 협력업체가 교육기관을 선택·신청·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 실시 전 혹은 교육 실시 후 종합건설사로부터 환급</p> <p>- 종합건설사는 협력업체의 교육지원이 확인되는 송금내역서와 함께 상호협력평가 서류 제출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p>

2.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건설산업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선 건설사업 참여자들의 인식개선이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이 상생협력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역할을 하려면 원·하도급사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 건설사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역할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현재는 원도급사 대상의 교육이 대부분이라, 하도급사의 권익보호나 상호협력 강화 등의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교육기관의 분리 뿐만아니라 교육내용 역시 차별화시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인 하도급사에게 필요한 건설계약 실무, 건설안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교육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표 3-3〉 상호협력평가 교육내용 개선을 위한 협력업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안)

구분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현행	개선(안)
교육 기관	-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업 교육기관 (6개)	·종합사업자 교육 : 대한건설협회 등 ·전문사업자 교육 :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교육 대상	- 종합건설사 임직원 - 협력업체 임직원	·종합사업자(임·직원) : 대한건설협회 등 ·전문업체(임·직원) :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교육 프로그램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안전관리, 윤리경영 등	[협력업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안)] - 환경·품질관리, 상호협력기술개발, - 건설계약 실무 - 건설안전, 중대재해처벌 - 하도급거래·분쟁·공사대금·사례, 분쟁조정 협의 등 - 건설계약 상생협력제도, 원·하도급자간 상생 역할 등 - 원·하도급자 윤리 의식, 공정거래 윤리경영 등

IV. 결 론

-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2022년의 경우 최우수 등급이라 할 수 있는 95점 이상 업체만 23개사로 지난해 보다 무려 10개사 증가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보여 왔음
- 그러나 상호협력 평가항목중 하나인 건설업교육 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효성 저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본 연구는 원도급사에 인센티브만을 주는 제도로 평가되는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교육대상의 비합리성, 교육대상별 교육기관의 분리 필요성, 차별화 되지 못한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분석됨
-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대상을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전환,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기관 분리 운영,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 하였음
- (교육대상을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전환)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거래 방지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대상을 종합건설사업자의 협력업자 임·직원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교육대상별 교육기관의 분리 운영)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시 종합건설사 임직원이 교육 대상인 경우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을 교육 기관으로 전문건설사 임직원이 교육대상인 경우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기관을 분리 운영하여 교육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함

-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시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건설업체별로 필요하고 요구되는 교육의 차별화가 필요함. 따라서 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인 하도급사에게는 건설계약 실무, 건설안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교육 등 별도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교육대상 개선

- ✓ 원도급자의 협력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실효적인 교육 지원 필요
- ✓ 건설업 교육대상을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전환

교육기관 분리 운영

-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별 교육기관의 선택권 부여 필요
- ✓ 종합건설업체는 건설협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협회에서 교육 담당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 원·하도급자별 요구되고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 필요
- ✓ 원·하도급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육의 다양성 확보

〈그림 4-1〉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 개선 방안

- 박승국, 선임연구위원(skpark@ricon.re.kr)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202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2. 국토교통부(2021), “대기업의 협력평가 기준”
3. 국토교통부(2021),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
4. 대한전문건설협회(2022), ‘2022년 건설업 교육 종합 평가’
5. 대한전문건설협회 교육센터, <https://edu.kosca.or.kr/main.do>
6. 홍성진 외(2018),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건설교육 센터를 중심으로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록

[별표1] 상호협력평가 기준(대기업)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평가 분야	항 목 별	배점
1. 공동도급 실적 (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1) 60%이상 (2) 50%이상 ~ 60%미만 (3) 40%이상 ~ 50%미만 (4) 30%이상 ~ 40%미만	5 5 4 3 2
	나.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실적 (당년도 공동도급 총기성액 대비 지역업체의 당년도 공사실적 합산액 비율) (1) 40%이상 (2) 30%이상 ~ 40%미만 (3) 20%이상 ~ 30%미만 (4) 15%이상 ~ 20%미만	5 5 4 3 2
2. 하도급 실적 (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5%이상 (2) 35%이상 ~ 45%미만 (3) 25%이상 ~ 35%미만 (4) 15%이상 ~ 25%미만	20 20 15 10 5
3. 협력업자 육성 (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하도급낙찰률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삭 제〉 ④ 전자 하도급계약	37 27 10 5 8 4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10 5 5

평가 분야	항 목 별	배점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4)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10
	다. 상생협약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의체 운영실적	5 2 2 1 3
4. 신인도 (18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3 3 2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없는 경우) -1 -2 -3 -5 -10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감점) (1) 시정명령 1회 (2) 고발 1회 (3) 과징금 1회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 -3 -5 -10

평가 분야	항 목 별	배점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1) 0명(2년 이상) (2) 0명(1년 이상) (3) 0명 초과 1명 이하 (4) 1명 초과 2명 이하 (5) 2명 초과 3명 이하 (6) 3명 초과	5 5 3 -3 -5 -10 -13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5.0 +4.0 +3.0 +2.0 +1.5 +0.5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1) 5건 이상 (2) 3건~4건 (3) 1건~2건	+3 +2 +1
	다.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3
	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실적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민간공사 현장 수 / 신규 민간공사 현장 수] (1) 80%이상 (2) 65%이상~80%미만 (3) 50%이상~65%미만 (4) 35%이상~50%미만 (5) 20%이상~35%미만	+8 +6 +4 +2 +1

[별표2] 상호협력평가 기준(중소기업)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1. 하도급 실적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25
	(1) 40%이상	25
	(2) 30%이상 ~ 40%미만	20
	(3) 20%이상 ~ 30%미만	15
	(4) 10%이상 ~ 20%미만	10
2. 협력업자 육성 (47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37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27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
	② 하도급 낙찰률	5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삭 제〉	8
	④ 전자 하도급계약	4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10
	① 재무분야	5
	② 교육분야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5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4)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다. 상생협업체 운영	5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업체운영 현장수 비율	2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2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1	
(2) 협업체 운영실적	3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3. 신인도 (28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사업자간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3
	(2) 시·도지사 표창 1회	2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20 (없는 경우)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1
(2) 과태료 1회	-2	
(3) 고발 또는 벌금 1회	-3	
(4) 과징금 1회	-5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감점)	(1) 시정명령 1회	-2
	(2) 고발 1회	-3
	(3) 과징금 1회	-5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
(1) 0명(2년 이상)	5	
(2) 0명(1년 이상)	3	
(3) 0명 초과 1명 이하	-3	
(4) 1명 초과 2명 이하	-5	
(5) 2명 초과 3명 이하	-10	
(6) 3명 초과	-13	
4.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 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 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60% 이상	+5.0
	(2) 60%~50%	+4.0
	(3) 50%~40%	+3.0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4) 40%~30%	+2.0
	(5) 30%~20%	+1.0
	(6) 20%~10%	+0.5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1) 3건 이상	+3
	(2) 2건	+2
	(3) 1건	+1
	다.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3
	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실적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민간공사 현장 수 / 신규 민간공사 현장 수]	
	(1) 80%이상	+8
	(2) 65%이상~80%미만	+6
	(3) 50%이상~65%미만	+4
	(4) 35%이상~50%미만	+2
	(5) 20%이상~35%미만	+1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 제도 개선 방안

2023년 12월 인쇄

2023년 12월 발행

발행인 김희수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I S B N 979-11-5953-170-5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3

